

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천식

성별 남 나이 50세 직종 환경미화워 직업관련성 높음

1 개 요

김○○(남, 50)은 1995년 2월 21일부터 S시청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던 중 2001년 4월 12일 천식성 기관지염(천식)으로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

김○○은 45세 때인 1995년 2월 21일부터 6년 2개월 간 S시청 재활용품 선별작업 장에서 7명의 동료와 함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 및 알루미늄 캔 분리 및 압 축, 페트병 압축, 스티로폼 용해 등의 작업을 통해 100리터 마대의 재활용품을 하루 약 200~300개 처리하였으나, 재활용품 마대에는 하루에 약 1톤 정도 일반 생활쓰레 기도 섞여 있었다. 작업장은 출입구 및 창문과 선풍기 3대만으로 환기가 이루어지고, 1개의 작은 화목난로로 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작업하며 비가 올 경우에도 건물 안에서 작업한다.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으로부터 약 500M 거 리에 매립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이 처리장으로부터 약 500M 거리에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, 오전 4시부터 반입되는 하루 약 60~120톤의 생활쓰레기를 투기한 후 포크레인으로 복토작업을 한다. 선별작업장 근무자 1명과 매립장 근무자 1명이 오 후 6시 이후에 당직하면서 매립장, 침출수 처리시설, 오전 6시 이전에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 운반차량 등을 관리하며 낮에도 필요시에는 선별작업장과 매립장 근무자가 서로 도와가며 작업한다.

3 의학적 소견

김○○은 입사시 폐질환이 없었고, 1998년도 정기건강진단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었으며, 2000년 6월의 정기건강진단에서 '기타 흉부질환 의심' 소견이 있었으나 2차검사를 하지 않았다. 1999년 3월부터 여러 병의원에서 천식,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. 2001년 4월 12일 평소와 같이 오전 7시부터 작업하다가 오전 9시 40분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S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나,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.

4 결 론

김○○은

- ① 재활용품 선별작업 중 천식성 기관지염(천식)을 선행사망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,
- ② 평소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매립작업 중 다양한 농도의 유기분진에 노출되었고,
- ③ 유기분진은 기관지 염증 및 그로 인한 기관지 폐색을 유발함으로써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거나,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,

작업 중 노출된 유기분진에 의한 호흡기 영향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.